

충북과학대학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

2000. 10.24
교육사회위원회

1. 심 사 경 과

- 가. 제안일자및제안자 : 2000년 10월 17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0년 10월 19일
- 다. 상정일자 : 2000년 10월 24일 (제180회 임시회 제2차교육사회위원회)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요지 (충북과학대학장 김광홍)

가. 제안이유

- 평생교육법 제25조 4항의 대학의 장은 대학생 또는 대학생외의 자를 대상으로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과정등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사회교육시설을 청주지역에 설치함으로써 날로 심각해지는 신입생 확보난 해결방법의 일환으로 청주지역의 대학홍보거점 확보와
- 타대학과 비교하여 적은 비용으로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민에게 봉사하는 도립대학 이미지를 구축하고
- 적극적인 사회교육원 운영으로 각종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 향후 평생 교육센터 운영의 기초를 마련하고자함

나. 주요골자

- 『사회교육원』 설치 관련조항 신설
 - 제6장에 “사회교육원” 신설
 - 충북과학대학부설 “사회교육원”을 둠 (안 제28조)
 - 충북과학대학부설 “사회교육원”의 기능 및 운영규정은 학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29조)
- 제6장 신설에 따른 “제7장” 및 “제8장” 조문 정비

3. 검토보고요지 (전문위원 박범수)

충북과학대학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 제25조(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제4항에 대학의 장은 대학생 또는 대학생외의 자를 대상으로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과정등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날로 심각해 지는 신입생 확보난 해결방법의 일환으로 충북과학대학 부설 사회교육원을 설치함으로써 대학홍보거점 확보는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민을 대상으로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 도민에게 봉사하는 도립대학 이미지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사회교육원 운영으로 각종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향후 평생 교육센터 운영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하여

사회교육원 설치 관련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및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첨부서류

가. 충북과학대학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충북과학대학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북과학대학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사회교육원

제28조(설치) 대학 부설 사회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제29조(기능 및 운영) 대학 부설 교육원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제6장”을 “제7장” 으트 하고, “제28조”를 “제30조”트 한다

“제7장”을 “제8장” 으트 하고, “제29조를 “제31조”트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신설></p> <p><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u>제6장</u> 감독</p> <p><u>제28조(감독 및 승인)</u> 대학의 운영·관리에 관하여는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은 사전 협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과의 설치 및 폐기 2. 학생 정원의 증가 3. 재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u>제7장</u> 보칙</p> <p><u>제29조(준용규정)</u>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등 관계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제6장</u> 사회교육원</p> <p><u>제28조(설치)</u> 대학 부설 사회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p> <p><u>제29조(기능 및 운영)</u> 대학 부설 교육원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장이 규칙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제7장</u> </p> <p><u>제30조(감독 및 승인)</u>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 3. ----- 4. ----- <p style="text-align: center;"><u>제8장</u> -----</p> <p><u>제31조(준용규정)</u> ----- ----- ----- -----</p>